

「평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이창열 의원
- 제안일자 : 2026. 02. 13.
- 회부일자 : 2026. 03. 12.
- 상정일자 : 2026. 03. 13.

2. 제안이유

-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관 설치를 포함한 시설 확충,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, 활성화 사업과 예산 지원에 대한 관리와 평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촌지역 소득 증대와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- 책무(안 제3조)

- 사업 등(안 제4조)
- 체험비 지원 등(안 제5조)
- 지도·감독 및 평가(안 제6조)
- 포상(안 제7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서 지방자치 단체는 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같은 법 제7조에서는 농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도·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사항을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도농간 교류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3조에서는 군수와 사업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4조에서는 군수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,
- 안 제5조에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활성화와 도농교류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,
- 안 제6조에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사업 및 예산 지원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·감독·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7조에서는 공로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농촌체험휴양마을 기반 마련을 통해 도농간 원활한 교류와 농촌 소득증대 및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촌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와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□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

제6조(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체험·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농어촌의 자연환경, 영농·영어(營漁)활동,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·휴양자원의 개발
2.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
3.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에 따른 기반 정비
4.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
5.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자의 경영 지원
6.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·연구
7. 그 밖에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 체험·휴양마을사업자에게 체험·휴양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12. 20.>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·군수등에게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5. 27., 2013. 3. 23.>

제7조(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) ①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시장·군수등은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

하여 성실히 노력하고,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도·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.

②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자는 그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 <개정 2009. 5. 27., 2013. 3. 23.>

1.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

2.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준수

③ 시장·군수등은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이 제2항에 따른 안전·위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·운영되거나 그 밖의 지정요건 등에 맞지 아니하면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등은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·위생교육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5. 27., 2013. 3. 23.>

□ 농어촌정비법

제81조(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·육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·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10. 22., 2013. 3. 23.>

1. 농어촌의 자연환경, 영농활동,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자원 개발

2.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육성

3. 농어촌 관광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·연구 및 홍보

②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>